

학생 상벌 규정

제정 : 1997. 03. 01.
 개정 : 2008. 06. 26.
 전면개정 : 2019. 01.11.
 개정 : 2019. 04. 05.

담당 : 교학팀(950-5405)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구성)	제4조(회의)
제5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포상의 종류와 대상)	제7조(포상의 발의)	제8조(포상의 형식)
제9조(이중포상 금지)	제10조(포상의 공표)	제11조(징계의 대상)	제12조(징계대상혐의의 조사 및 고지)
제13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제15조(심의절차)	제16조(징계처분 및 통지)
제17조(징계의 재심의)	제18조(보직)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학생생활 지도상의 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위 원 회

제3조(구성)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은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포 상

제6조(포상의 종류와 대상) ① 포상은 매 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종류와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총장상 : 신입학자로 총 4년 동안 평점평균 학과별 성적 최우수

나. 이사장상 : 총학생회 회장으로 봉사한 자

다. 총동문회장상 : 신입학자로 총장상을 제외한 전체 성적 최우수(4년 평점평균)

라. 선교회이사장상 : 전도반장 중에서 신앙훈련과 추천을 받은 자

마. 에스라상 : 성경 다독자 중 신앙훈련과의 추천을 받은 자

바. 스룹바벨상 : BRC 4년 연속 참여자

사. 웰던(Well-Done)상 : 채플 4년 개근자(신설19.04.05.)

②위의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가. 재학기간 동안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학생과 각 학과(전공)에서 최우수한 자

나. 학년 중 근면하여 결석이 없고 평소 품행이 방정한 자

다. 사상이 건전하고 지휘통솔력이 있어 학교 발전과 학생자치활동에 기여한 자

라. 각 부문에서 우수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마. 학교 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제7조(포상의 발의) 제6조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는 학과장 또는 교학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장 의견서 1부

제8조(포상의 형식) 포상권자는 포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포상의 형식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의 공표) 포상의 사실은 본교 내 적절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징 계

제11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

2.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을 한 경우
4.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음주나 흡연 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의를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미신적 신비주의 및 기독교계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종교집단의 교리 등을 통해 선전·포교한 경우
7.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징계대상혐의의 조사 및 고지) ① 교학처장은 학생이 제11조의 규정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교학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교학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징계혐의 학생(이하“학생”이라 한다)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당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교학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위원장은 학생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와,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연행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서면진술서의 제출기회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지도교수와 학과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의 종류 및 양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근신 : 5일 이상 14일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기정학 : 15일 이상 90일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정학
5. 퇴학
- ② 징계의 양정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근신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60일 이상의 정학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학을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절차)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제7조에 의하여 포상 발의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교학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교학처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징계 발의된 학생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생징계 의결서에 의하여 하되,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징계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총장은 징계 의결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처분 및 통지) ① 징계를 받은 자의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 ②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다만, 근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징계 외에 일정 시간의 교내외 봉사 및 신앙교육, 학생상담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거쳐 추가 징계할 수 있다.
- ④ 총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징계대상 학생과 학부모, 그 학생이 속한 학과장에게 처분내용을 통지한다.

제17조(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의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제 5 장 보 칙

제1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며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과 동시에 기존 「학생 상벌 규정」 및 「학생 상벌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신설19.01.11.)

대 상 자 학 적 사 항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학 과 장	
공 적 사 항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위 사실은 상이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과장(교학처장)		(서명)	

장학및학생복지지도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신설19.01.11.)

대 상 자 학 적 사 항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학 과 장	
징 계 요 청 사 유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징계의 양정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교학처장)		(서명)	

장학및학생복지지도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신설19.01.11.)

출석 통지서(제13조 관련)

대 상 자 학 적 사 항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출 석 통 지 사 항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한국성서대학교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장학및학생복지지도위원장		(인/서명)	
귀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학적사항	학번		학과
	성명		학년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한국성서대학교 장학및학생복지지도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신설19.01.11.)

학생징계의결서(제15조 관련)

징 계 대 상 자 학 적 사 항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p>년 월 일</p> <p>한국성서대학교 장학및학생복지지도위원회</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서명)</td> </tr> </table> <p>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귀하</p>				위 원 장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장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위 원	(인/서명)																		

[별지 제5호 서식](신설19.01.11.)

학생징계처분통지서(제16조 관련)

대 상 자 학 적 사 항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처분내용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p>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직인)</p> <p>귀하</p>			